

# 서울특별시 세운초록띠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가. 의안번호 : 제1583호
- 나. 제 안 자 : 김재진 의원(찬성자 33명)
- 다. 제 안 일 : 2024년 2월 5일
- 라. 회 부 일 : 2024년 2월 7일

### 2. 제안이유

- 세운초록띠광장의 명칭이 2014년 다시세운광장으로 재편되었으며, 현재는 '세운광장'으로 통상적 명칭사용이 이루어지고 있어 조례를 현행화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세운초록띠광장'을 '세운광장'으로 현행화하여 정비함(안 제1조, 제2조제1호, 제2호)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 5. 검토 의견

### 가. 개요

- 이번 「서울특별시 세운초록띠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세운초록띠광장”이 2014년 “다시세운광장”으로 재편되었고 현재는 통상적으로 “세운광장”이라는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실제 통용되는 광장의 명칭으로 조례 제명과 조문을 현행화하고 정비하여 조례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함으로써 정책 집행과정에서의 혼란을 없애고자 함

현 행	개 정 안
<p>서울특별시 세운초록띠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p>	<p>서울특별시 세운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위하여 <u>세운초록띠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u>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u>세운광장</u>-----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제2조(정의) ----- -.</p>
<p>1. “<u>세운초록띠광장</u>”이란 종로구 장사동 11-6-3 일대 광장형태로 조성된 장소를 말하며, 해당구역 지상의 부대 시설물 전체를 의미한다.</p>	<p>1. “<u>세운광장</u>”이란 ----- -----.</p>
<p>2. “사용”이란 <u>세운초록띠광장(이하 “광장”이라 한다)</u>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함으로써 불특정 다수 시민의 자유로운 광장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p>	<p>2. “사용”이란 <u>세운광장(이하 “광장”이라 한다)</u>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함으로써 불특정 다수 시민의 자유로운 광장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p>
<p>3. 4. (생략)</p>	<p>3. 4. (현행과 같음)</p>

## 나. 검토 내용

### “세운광장 추진경과”

- 현행 조례는 '09.11.11일 제정·시행되었으며, “세운초록띠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음
  - ※ 현행 조례 제2조에서는 세운초록띠광장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고, 제5조~제12조는 광장의 사용신청, 사용허가 및 사용제한, 사용료 징수 및 면제 등 광장 사용 관련 사항들을 규정함
- 당초 “세운초록띠광장”이 지칭하는 “종로구 장사동 116-3 일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2조제6호나목1)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 중 공간시설인 “광장(경관광장, '07.1월 결정)”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로, '09.5월 세운초록띠공원<sup>2)</sup> 조성이 완료되고 같은 해 11월 현행 조례가 제정·시행 되었음
- '14.3월 서울시는 세운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면서 당초 “광장(경관광장)”으로 결정되어 있던 세운초록띠공원을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지침상의 공원 조성 기준 준수 및 향후 활용도 증대를 위해 조성 완료된 면적에 대하여 “공원(문화공원)”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결정<sup>3)</sup>함
- 이후 2016년 ‘다시세운 프로젝트’ 착수에 따라 도시재생으로의 정책기조 전환으로 “세운초록띠광장”은 “다시세운광장”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현재는 “세운광장”으로 불리는 공간이 재조성되었음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나.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2) 세운초록띠공원(세운1구역)은 기존 종묘와 남산을 연계하는 세운녹지축 1단계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통해 현대상가를 철거하고 폭원 50m, 연장 70m의 광장형태의 공원을 조성하였음

3)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14-119호, 2014.3.27.)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m <sup>2</sup> )		
				기정	변경	변경 후
폐지	광 장	경관광장	종로구 장사동 116-3번지 일원	9,539	감)9,539	
신설	공 원	문화공원	종로3가 143-1번지 일원	-	증)3,748.3	3,748.3

- '18.1월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공사 완료 후에도 상부의 “세운광장” 과 하부의 “세운홀”은 이 조례에 따라 운영되어 오고 있으며, '23.12 월까지의 사용허가 건수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 < 사용허가 현황 >

(단위: 건, 천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계	
	허가 건수	사용료	허가 건수	사용료	허가 건수	사용료	허가 건수	사용료	허가 건수	사용료	허가 건수	사용료	허가 건수	사용료
계	30	3,050	45	8,588	6	138	20	5,772	24	4,915	26	1,522	151	24,012
세운광장	10	1,961	7	5,289	2	68	3	2,652	8	1,393	5	456	35	11,819
세운홀	20	1,088	38	3,299	4	70	17	3,119	16	3,522	21	1,095	116	12,193

(2023.12월 기준)

### < 세운광장 추진경위 >

- '06.10.26 : 세운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 '07.01.25 : 도시계획시설(광장: 경관광장) 결정
- '07.05.25 : 도시계획시설(광장)사업 실시계획 고시
- '07.07.30 : 세운 재정비촉진계획 결정(1단계구간: 1, 4구역)
- '08.12.17 : 현대상가 철거 및 녹지축 조성공사 착공
- '09.05.20 : 세운초록띠공원 조성 완료
- '09.11.11 : 「세운초록띠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시행
- '14.03.27 : 세운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광장→문화공원)
- '16.01.28 : 다시세운 프로젝트 착수 대외발표(다시세운 경사광장 조성 추진)
- '16.05.23 : 문화재 정밀발굴 조사 착수(한성부 중부관아터 추정)
- '16.10.21 : 문화재위원회 심의(조건부 통과) ※ 문화재 보존 추진
- '18.01.11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공사완료 공고

### “개정 타당성 및 추가 개정사항”

- 최초 조례 제정 이후 15년의 시간이 경과되었으므로 달라진 여건을 반영하여 현재 통상적으로 사용 중인 광장의 명칭으로 조례 제명과 조문을 현행화하려는 것은 타당한 일이라 생각됨

- 다만, 현행 조례는 종로구 장사동 116-3 일대의 “세운초록띠광장”으로 지칭하는 “경관광장”을 사용 및 관리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현재의 “세운광장”은 「국토계획법」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공원”에 해당하며 도시계획시설 구분상 공원에 관한 사항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에서 통합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현행 조례가 제정되었던 2009년과 달리 현재는 도시계획시설 “광장(경관광장)”이 아닌 “공원(문화공원)”에 해당하는 시설을 광장 조례에 따라 관리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 실질적으로는 “세운광장”이 “광장”의 용도로 허가·운영되고 있는 현재의 상태 및 2014년에 “공원”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한 취지와 용도, 향후 서울시 정책 방향(녹지생태도심 등)에 따른 시설물 관리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시계획시설(공원) 적정성 여부와 소관부서에 대한 검토 또한 필요하다 하겠음
- 아울러,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제1호에서 “세운광장 위치”로 규정하고 있는 “종로구 장사동 116-3” 일대는 현재 폐쇄되어 사용되지 않는 지번으로 확인되었으며<sup>4)</sup>, 해당 지번은 2009년 종묘와 남산을 잇는 세운녹지축 1단계 사업 시행으로 인해 '09.12.30일자로 “종로구 장사동 2-1”로 변경되었으므로,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취지에 맞춰 현행 조례 제2조제1호에 “세운광장 위치”를 “종로구 장사동 2-1”로 현행화하여 추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4) 서울특별시 부동산종합정보(<https://land.seoul.go.kr/>)

변경 전 지번	변경 후 지번	변경일자	변경사유	사업명
장사동 일반 116-3	장사동 일반 2-1	2009-12-30	토지개발사업	도심남북녹지축 1단계조성사업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세운초록띠광장”이란 종로구 장사동 116-3 일대 광장형태로 조성된 장소를 말하며, 해당구역 지상의 부대 시설물 전체를 의미한다.</p> <p>2. “사용”이란 세운초록띠광장(이하 “광장”이라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함으로써 불특정 다수 시민의 자유로운 광장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p> <p>3. 4. (생략)</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세운광장”이란 종로구 장사동 116-3 일대 광장형태로 조성된 장소를 말하며, 해당구역 지상의 부대 시설물 전체를 의미한다.</p> <p>2. “사용”이란 세운광장(이하 “광장”이라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함으로써 불특정 다수 시민의 자유로운 광장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p> <p>3. 4. (현행과 같음)</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세운광장”이란 종로구 장사동 2-1 일대 광장형태로 조성된 장소를 말하며, 해당구역 지상의 부대 시설물 전체를 의미한다.</p> <p>2. “사용”이란 세운광장(이하 “광장”이라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함으로써 불특정 다수 시민의 자유로운 광장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p> <p>3. 4. (현행과 같음)</p>

#### 다. 종합 의견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정 당시의 “세운초록띠광장”의 명칭이 현재 “세운광장”으로 변경되었으므로, 현행 조례의 제명 「서울특별시 세운초록띠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세운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제명에 맞춰 분칙, 별지 서식에서 사용하고 있는 “세운초록띠광장” 용어를 “세운광장”으로 일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 현재 사용 중인 광장의 명칭으로 조례 제명과 조문을 정비하는 것은 시

민들의 혼동을 최소화하고 조례의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는 바람직한 입법 조치라 할 수 있겠음

- 그러나, 국토계획법에 따라 결정된 공원 내 시설은 공원 관련 조례로 관리·운영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되는 한편, 현행 조례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광장”의 용도로 허가·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한 조례의 현행화와 더불어 “세운광장”의 도시계획시설(공원) 적정성 여부 및 향후 시설물 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한 소관부서 지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음
- 또한, 현행 조례 제2조제1호에서 “세운초록띠광장 위치”로 규정하고 있는 “종로구 장사동 116-3”의 지번이 '09.12.30일자로 “종로구 장사동 2-1”로 변경되었으므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취지에 맞춰 이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

## 붙임1 관련 법령 등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4. 14., 2012. 12. 18., 2015. 1. 6., 2017. 4. 18., 2017. 12. 26., 2021. 1. 12.>

4. **“도시·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을 말한다.

가.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나.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다.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라.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바.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나.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다.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공급시설

라. 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

마. 하천·유수지(遊水池)·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바. 장사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사. 하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7. **“도시·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기반시설)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당해 시설 그 자체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5. 9. 8., 2008. 5. 26., 2009. 11. 2., 2013. 6. 11., 2016. 2. 11., 2018. 11. 13., 2019. 12. 31.>

1. 교통시설 :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자동차정류장·궤도·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2. 공간시설 : 광장·공원·녹지·유원지·공공공지**

3. 유통·공급시설 :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시장, 유통저장 및 송유설비

4. 공공·문화체육시설 : 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

5. 방재시설 : 하천·유수지·저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

6. 보건위생시설 : 장사시설·도축장·종합의료시설

7.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폐차장

②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중 도로·자동차정류장 및 광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할 수 있다. <개정 2008. 1. 8., 2010. 4. 29., 2016. 5. 17., 2021. 7. 6., 2023. 7. 18.>

**3. 광장**

- 가. 교통광장
- 나. 일반광장

**다. 경관광장**

- 라. 지하광장
- 마. 건축물부설광장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추가적인 세분 및 구체적인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2013. 5. 22., 2018. 12. 18., 2020. 2. 4., 2020. 6. 9.>

3. **“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다만, 제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제39조, 제40조, 제42조, 제46조, 제48조의2, 제52조 및 제52조의2에서는 나목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제외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공원으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이하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 한다)

4. **“공원시설”**이란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 또는 광장**

- 나. 화단, 분수, 조각 등 조경시설
- 다. 휴게소, 긴 의자 등 휴양시설
- 라. 그네, 미끄럼틀 등 유희시설
- 마. 테니스장, 수영장, 궁도장 등 운동시설
- 바. 식물원, 동물원, 수족관, 박물관, 야외음악당 등 교양시설
- 사. 주차장, 매점, 화장실 등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
- 아. 관리사무소, 출입문, 울타리, 담장 등 공원관리시설
- 자. 실습장, 체험장, 학습장, 농자재 보관창고 등 도시농업(「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농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위한 시설
- 차. 내진성 저수조, 발전시설, 소화 및 급수시설, 비상용 화장실 등 재난관리시설
- 카. 그 밖에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5. **“녹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녹지로서 도시지역에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함으로써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제15조(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 ① 도시공원은 그 기능 및 주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개정 2012. 12. 18., 2013. 5. 22., 2016. 3. 22., 2020. 2. 4., 2021. 1. 12.>

1. 국가도시공원: 제19조에 따라 설치·관리하는 도시공원 중 국가가 지정하는 공원
2. 생활권공원: 도시생활권의 기반이 되는 공원의 성격으로 설치·관리하는 공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공원이 가. 소공원: 소규모 토지를 이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및 정서 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나. 어린이공원: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다. 근린공원: 근린거주자 또는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3. 주제공원: 생활권공원 외에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공원**

- 가. 역사공원: 도시의 역사적 장소나 시설물, 유적·유물 등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 나. 문화공원: 도시의 각종 문화적 특징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 다. 수변공원: 도시의 하천가·호숫가 등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여가·휴식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 라. 묘지공원: 묘지 이용자에게 휴식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묘지와 공원시설을 혼합하여 설치하는 공원
- 마. 체육공원: 주로 운동경기나 야외활동 등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 바. 도시농업공원: 도시민의 정서순화 및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하여 도시농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 사. 방재공원: 지진 등 재난발생 시 도시민 대피 및 구호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공원
- 아. 그 밖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공원

② 제1항 각 호의 공원이 갖추어야 하는 규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9. 16.]

##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 1. 7., 2011. 7. 28., 2015. 10. 8., 2023.12.29.>

1. "공원관리청"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서울특별시장·자치구청장을 말한다.
2. "이용료"란 공원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사용료"란 공원관리청이 공원시설의 관리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임대료 개념으로 시가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4. "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도시공원을 말한다.

**제15조(공원입장료 및 이용료)** ① 영 제46조에 해당하는 공원의 입장료와 공원 및 공원시설 이용료는 원가계산, 물가상승률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의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 7. 15., 2011. 7. 28.>

② 위탁관리자가 공원시설 이용료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시행 전에 공원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공원관리청은 위탁관리자가 신고한 이용료가 부당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8.>

③ 공원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공원의 입장료 및 이용료를 외국환 및 신용카드로 받을 수 있다.이 경우 환율은 서울특별시금고 은행의 전일 최종 현금 매입가를 적용하여 받고, 거스름돈이 있을 경우 1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7. 28.>

④ 공원시설을 3개월 이내로 이용할 경우 이행보증금(시설이용료의 15 이내)을 예치하여야 하며, 이행보증금은 원상복구가 끝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요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 <신설 2010. 1. 7.>

[별표 2] <개정 2021. 3. 25.>

**공원시설 이용료(제15조제1항 관련)**

공원별	종 별	사용기준	금 액(원)		비 고
			체육경기	기타행사	
공 통	잔디광장	1㎡당, 2시간	20~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토, 공휴일은 이용료 30% 가산</li> <li>야간에는 이용료 30% 가산(토, 공휴일은 제외)</li> <li>2시간 초과시 초과시간당 이용료는 시간당 이용료의 50% 할인</li> <li>풋살경기장은 청소년 이용시 30% 할인, 어린이는 무료. (이 경우 청소년 및 어린이의 팀 구성원 비율이 50% 이상일 때 적용)</li> <li>평일 단체 이용시 30% 할인</li> <li>입소일(1박2일 기준)이 공휴일이 아닌 월~목요일인 경우 20인(야영장소 5면) 이상 이용시 30% 할인</li> <li>영리행위에 한함. 다만, 홍보 및 마케팅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면제할 수 있다.</li> </ul>
	일반운동장(광장)		5~10	10~20	
	축구장	잔디	120,000~156,000	300,000~390,000	
		인조잔디	55,000~82,500	110,000~143,000	
	풋살경기장	10인용	25,000~32,500		
		6인용	15,000~19,500		
	테니스장	실외	1면당, 2시간당	8,000~16,000	
		실내	1면당, 2시간당	25,000~37,500	
	파크골프장	어 른 1회당 청소년 1회당 어린이 1회당	4,000~6,000 3,000~4,000 2,000~3,000		
	파크골프장 물품대여료	클럽(1회당, 개당)	1,000~2,000		
	야영장(캠핑장)	야영장소 1회당	10,000~30,000		
		전기 1회당	3,000~5,000		
	야영장(캠핑장) 물품대여료	야영텐트 1회당	5,000~20,000		
		1인용매트 1회당	1,000~1,500		
	사진·영상 촬영녹화	최초 1시간 초과시간당	13,000~19,500 6,500~13,000		
공원이용 프로그램참가비	1회당 (1일당)	1,000~20,000			
강의실	1㎡당, 1시간당	200~3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회의실 등 강의실과 유사한 형태나 용도를 가진 시설 포함</li> <li>부대시설 및 장비 이용료는 별도 산정</li> <li>야간은 주간 이용료의 100% 가산</li> <li>2시간 초과시 초과시간당 이용료는 시간당 이용료의</li> </ul>		

				50% 할인 ◦ 공원이용 활성화 및 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면제할 수 있음	
	공연장 (북한문화공간 포함)	1㎡당, 1시간당	100~200	◦ 일(8시간) 단위 계산 ◦ 야간은 주간 이용료의 30% 가산 ◦ 부대시설 및 장비 이용료는 별도 산정 ◦ 실내공간에 한한다. 단, 필요한 경우 옥상공간을 포함한다. ◦ 다음 사항의 경우는 적용을 제외한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법을 제40조에 따라 별도 조례로 정하는 경우 - 개정 시행일 기준에 관리위탁 및 사용·수익허가된 경우에는 협약기한까지 적용 - 국가시설로 시설 관련법 등 별도 규정에 의해 국가가 관리하는 경우	
	야외무대	2시간당	100,000~150,000		
	청소년 체험의 숲	어 른 1회당 청소년 1회당 어린이 1회당	8,000~12,000 5,000~8,000 3,000~5,000	◦ 평일 단체 이용시 30% 할인 ◦ 키 140cm 이상	
	국궁장	1일(3시간)	2,000~4,000	◦ 만 65세 이상 이용자는 30% 할인 ◦ 청소년·어린이는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1개월	20,000~40,000		
	입장권 발매행사	입장권을 발매하는 유료행사	입장권 발매총액의 10~15%	◦ 시정홍보 및 공원이용 활성화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면제할 수 있음 ◦ 장소 이용료, 점용료는 별도징수	
산원	차량통행료	승합자동차 (16인승이상)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15인승이하)	3,000 ~ 6,000 2,000 ~ 4,000	◦ 순환버스·시티투어버스·긴급 및 통행허가차량·장애인콜택시·장애인심부름센터차량은 무료	
서울 대공원	성인 야구장	1일	70,000~ 91,000	200,000~ 260,000	◦ 토, 공휴일은 이용료 30% 가산 ◦ 야간에는 이용료 30% 가산 (토, 공휴일은 제외) ◦ 야간 이용시 전기료 별도 납부 ◦ 전광판 이용시 전광판 이용료 별도 납부 ◦ 리틀야구장은 주간만 운영
		3시간	42,000~ 54,600		
	리틀 야구장	1일	35,000~ 46,000	100,000~ 130,000	
3시간		21,000~ 27,300			
	서울대공원 캠핑장	어 른 1회당 청소년 1회당 어린이 1회당	2,000 ~ 4,000 1,500 ~ 3,000 1,000 ~ 2,000		

**붙임2**    **현행 조례에 따른 광장사용료 기준**

**서울특별시 세운초록띠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1**

구 분	단 위	금 액(원)	비 고
사 용 료	m <sup>2</sup> /시간	10원	
기 타	1. 광장면적의 2분의 1을 넘게 사용하는 경우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2.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본다. 3. 야간사용료(18:00~다음날 06:00)는 사용료의 3할을 가산한다. 4. 신청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실제 사용한 시간에 해당하는 사용료에 주간은 초과한 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3할을, 야간은 초과한 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5할을 가산한다. ※ 행사관련 시설의 설치 및 철거에 소요되는 시간도 사용시간에 포함한다.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 서울특별시 세운초록띠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세운초록띠광장’을 ‘세운광장’으로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서울시의 재정 수입 순감소나 재정 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3. 작성자**

-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 담    당    관    오희선
- 추계세제팀장    이정수
- 추 계 분 석 관    김지혜 (02-2180-7953)